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공포 제2025-12호(개정 2026.3.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정 개발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상 전공교육과정 개발은 학생이 달성해야할 교육목표(기술·지식영역 및 수준)를 제시하여, 실습 및 이론 교과목의 편성·과목별 학습목표·교육운영 및 평가방법 등을 교육목표에 맞게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연계시키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란 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대학이 형성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달성해야할 교육성과를 포함한다.
2. “교육만족도”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만족도를 말한다. 영역에 대한 문항 및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 고유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적용한다.
3.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이란 순수기초학습프로그램과 전공학습의 기초가 되는 전공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이란 의사소통능력, 수리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지원관리능력, 기술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 변화관리 능력, 자기개발능력 등과 관련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전공교육”이란 학문의 지식이나 기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6. “전공”이란 어떤 학문이나 학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또는 그 학문을 말한다.
7.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어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바람직한 인간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조직 및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 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승인한다.
 - 나. 강의계획서에 대하여 승인한다.
 - 다. 직업기초 교양교육 과정에 대하여 승인한다.
2. 교무처 (개정 2025.2.17.)
 - 가. 교육과정에 대한 수립 및 운영 정책 입안
 - 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 다. 학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활동
 - 라. 교육과정에 대한 실적 분석 및 종합보고
 - 마.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 바. 교양과목 교육과정 정책 개발
 - 사. 직업기초능력 교양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아. 그 밖의 교육과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학과
 - 가. 학과별 교육목표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 나. 교육과목별 담당교수, 담당시간 등 작성
 - 다. 교육과정 강의시간표 작성
 - 라. 강의계획서 작성(이론과 실습계획 비율 고려)

제5조(교육과정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정책 수립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며 대학이 설정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립한다.
2.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

학교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교육과정은 장안대학교의 설립이념인 “장안대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서림학원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실하고 유능한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설립이념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4.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5. 교육과정은 대학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 가. 학식과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선량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 나. 전문적인 이론과 실험·실습교육으로 창의력을 계발하여 현대의 고도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
6. 교육과정은 학부, 학과의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갖는 학부, 학과(전공)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목표를 두어 실행도를 높인다.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및 개선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발
 - 가.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고, 산업체의 요구분석, 기 개발된 NCS능력단위분석, 필요직무 및 능력을 분석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나. 교무처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2.17.)
 - 다. 교무처는 결정된 교육과정을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7.)
 - 라. 교무처는 교과목 학수번호 부여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관련학과에 전달하고, 수강 준비를 한다. (개정 2025.2.17.)
 - 마. 교육과정 개발(개편)주기는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정책방향 등 의 부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개편)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
 - 가.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일반선택, 교직 포함)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한다.
 - 나.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과별, 전공별 교육과정은 해당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다.
 - 다.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산업체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
 - 라.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 마.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다양한 학습 수요와 진로에 특화하여 하나 이상의 세부전공(트랙)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6.20.)
3.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직업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내용에는 산업체 및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학기별로 강의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한다.
4.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을 실시한다.
 - 나. 교무처는 학과별 또는 부서별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실시한다. (개정 2025.2.17.)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과정에 관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심의·편성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2.17.)
2. 각 위원회에서 수합된 모든 사항의 최종 의결은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이다

3. 각 위원회에서는 본 대학교의 전공 및 교양과정,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현장중심과정, 직업 기초과정, 학점인정과정 등을 모두 관장한다.
4.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2.17.)
5.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2.17.)
6.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학과단위로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전임교수와 2인 이상의 산업체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학사제도 개선) 학사제도의 계획 · 실시 · 개선은 다음과 같다.

1. 학사제도 계획
 - 가. 해당학과는 학사제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된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 과정을 개설한다.
 - 나. 해당학과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된 학사제도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개설한다.
 - 다. 교무처는 학사제도에 대한 과정 검토를 실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17.)
 - 라. 해당학과는 학사제도 유형별 해당 과정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2. 학사제도 실시 (개정 2021.1.4.)

해당학과는 학사제도 유형별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연번	학사제도 유형	담당부서	해당규정
1	계절학기	교무처 교무팀	계절학기 운영규정
2	산업체위탁교육	교무처 교무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규정
3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4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무처 교무팀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5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시간제 등록생 운영규정
6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정(2021.1.4.)	현장실습 운영규정
7	후기졸업제	교무처 교무팀	후기졸업에 관한 규정

3. 학사제도 검토
 - 가. 각 학과별 추진실적은 해당연도 별로 평가하고, 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재를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7월, 익년도 1월) (개정 2025.2.17.)
 - 나. 교무처는 학사제도에 대하여 달성 상황 또는 중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사제도 운영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개정 2025.2.17.)
 - 다. 교무처는 학사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2.17.)
4. 학사제도 개선
 - 가. 해당학과는 추진실적 분석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대책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나. 교무처는 학사제도 분석결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2.17.)

제9조(현장중심 전공교육) 현장중심 전공교육의 계획 · 실시 및 개선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중심 전공교육의 계획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2. 현장중심 전공교육의 실시
 - 가. 교과이수
 - ㄱ. 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
 - ㄴ. 비율은 교양과목을 이수학점의 10~20%로, 전공과목은 80~90% 비율로 하여야 한다.
 - ㄷ.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 실기는 1주 2시간씩 30시간 이상의 실습을, 간호학과의 임상실습 교육은 1주 3시간씩 45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3.6.)
 - ㄹ.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ㅁ. 현장실습 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교과목 담당교수 및 시간배정

각 학과장은 학기개시 30일 전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과목별 담당교수 명단과 담당시간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이를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장에게 확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강의시간표

- ㄱ. 각 학과장은 확정된 사항에 따라 학기별 강의 시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시작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ㄴ. 전임교원은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동일 학급에서 동일한 날짜에 3시간 이상 연속강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실험실습 과목은 예외로 한다.

라. 강의계획서

- ㄱ. 교과 담당교수는 매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을 위해 수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ㄴ. <삭제 2020.3.23.>
- ㄷ. 학과장은 교과 담당교수가 작성한 강의계획서 내용이 학과의 교육목표와 정체성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과정을 거쳐 지정된 기일까지 재입력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마. 현장실습

현장실습의 최대 효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ㄱ. 현장실습 학과장은 실습 인원별 적정 실습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ㄴ. 현장실습 학과에 대한 현장실습과목은 1~3학점으로 하되, 1일 6시간, 주 30시간(4주 120시간 이상) 이상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교유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 ㄷ. 학과장은 산업체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ㄹ. 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수업 중 1일 6시간, 주 30시간(4주 120시간 이상) 이상 지속 운영하며,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ㅁ. 현장실습 학과의 현장실습 기간은 1~3학년 학기 중, 하계 및 동계방학 4주 이상 학과가 지정한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 ㅂ. 현장실습 대상학과가 아닌 학과의 현장실습 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현장중심 전공교육 검토

- 가. 편성된 교육과정은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과별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개정 2020.3.23.)
- 나. 각 학과별로 전공교과목 실습 및 이론 편성 비율(실습시수(학점))/(실습과목 학점(시수)에 대한 학과별로 설정한 목표비율을 유지하도록 개선한다.
- 다. 교무처는 현장중심 전공교육 교육과목의 실습 및 이론 편성 비율을 학부별 목표비율 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달성상황 또는 중요한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관리항목	산출식	주기	보고부서
실습과목 시수 비율	실습 과목 학점(시수)/(실습과목 학점(시수) +이론과목 학점(시수)) ×100	학기	교무처

* 실습과목 : 외부 현장실습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 라. 각 학과별로 실습과목의 비율은 전공과목의 20% 이상 ~ 80%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특성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4. 현장중심 전공교육 개선

- 가. 학과는 현장중심 전공교육 교육과목의 분석결과 실습과목 시수 목표비율 대비 부진사유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실시한다.
- 나. 교무처는 전공교과목 분석결과 실습과목 시수 목표비율 대비 부진사유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2.17.)

제10조(전공심화교육) 전공심화교육은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교양 및 직업기초교육의 계획 · 실시 및 개선은 다음과 같다.

1. 교양 및 직업기초교육의 계획

- 가. 학생의 직업 기초학습능력 및 인성 개발을 위한 교양교육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전문직

업인으로서의 인성과 교양함양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정책과 운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

나. 교양과목 운영 정책

ㄱ. 교양운영의 전략

학생선택권의 확대, 감성리더십의 도입, 민주시민교육의 함양

ㄴ.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및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일반교양과목 개설

ㄷ.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격, 가치관, 윤리, 사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교과목과 일반교양과목을 따로 분류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조화롭게 구성되도록 개설

다. 교양과목은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교양 및 직업기초 교육의 실시

교양교육 과정은 다음 영역으로 일반교양, 직업기초능력 교육과목을 운영한다.

ㄱ. 일반교양

ㄴ. 직업기초능력

3. 교양 및 직업기초 교육의 평가

대학의 교양교육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기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학기별로 강의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한다.

4. 교양 및 직업기초 교육의 개선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을 실시한다.

나. 교무처는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실시한다.

제12조(기록 및 보관) 각종 기록의 보관 양식 및 관리부서,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0000. 00. 00.)

양 식 명	서식	관리부서	보존연한
전공교과목의 실습 및 이론 편성 비율	[서식 제1호]	교무처	5년

제13조(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장안대학교 학칙
2. 장안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3. 전공교과 수준별교육 운영지침
4. 계절학기 운영규정
5. 산업체위탁교육 운영규정
6.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7.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8.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9. 현장실습 운영규정
10. 후기졸업에 관한 규정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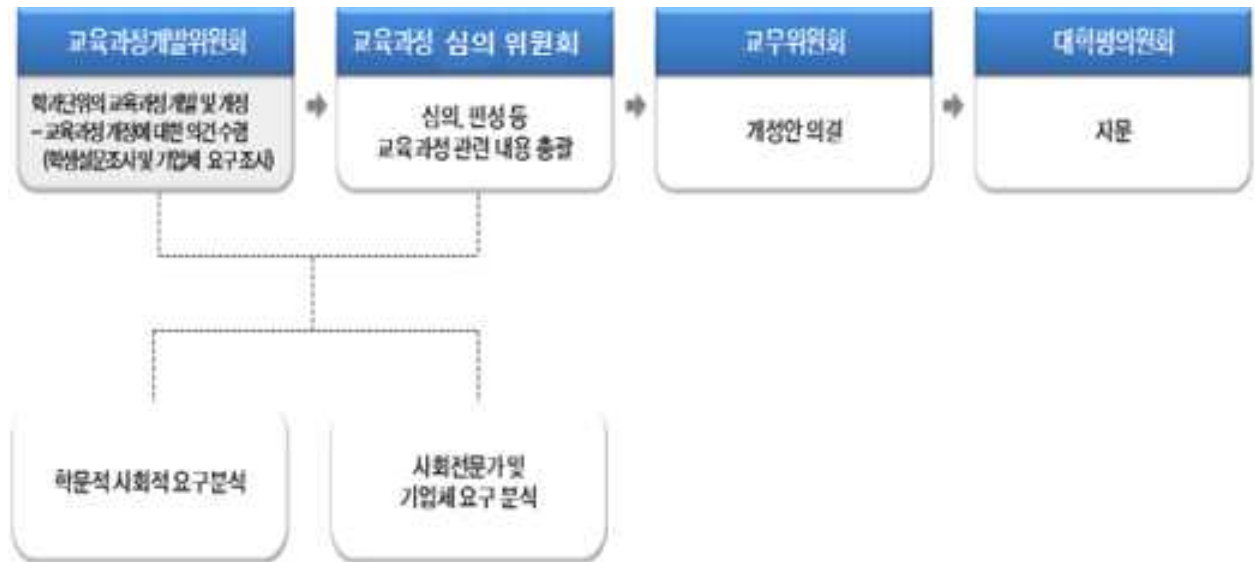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과정 개발 체계도



[서식 제1호]

전공 교과목의 실습 및 이론 편성 비율

전 공	인재양성교육 목표	교과목		실습시수 비율 ($A/(A+B) \times 100$)	비 고
		실습과목 학점(시수)(A)	이론 과목 학점(시수)(B)		
평 균					

평균 = 실습시수 비율 평균

※ 실습과목은 외부 현장실습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에 한함